

#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안내①

4대보험 및 산재처리 등 각종 노무실무는 내용이 복잡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필요한 노무비 지출로 이어진다.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가 인사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노무관련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25일 <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강습회>를 개최했다.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「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」를 이번호부터 연재한다. [편집자주]

**Q :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?**

**A :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.**

◆ 가입대상

-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. 비속(배우자의 직계존. 비속 포함) 및 형제,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.

◆ 자격취득시기

-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
-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(변동)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

※ 지역가입자 : 피보험자만 있음

※ 직장가입자 :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있음

**Q : 재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4대보험 신고는?**

**A : 하도급사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함**

◆ 건강보험과 국민연금

재하도급 본사 소속 상용 근로자들의 4대보험은 그 회사에서 신고를 하며, 직영, 시참자, 일용근로자들의 4대보험 신고는 하도급사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※ 원도급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의 관리감독 책임이있어 하도급사와 재하도급사와의 불법하도급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,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했을지라도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어 하도급사에서 직영, 시참자,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, 재하도급사 상용직 근로자들의 근로내역 신고는 재하도급사에서 신고 가능함

**Q : 하도급 계약서상 퇴직 공제부금이 초과하였을 경우?**

**A : 발주자와 원도급사에 초과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**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6항에 의거 발주자는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며,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도급 계약 당사자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※ 원도급사와의 관계상 현실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음

**Q : 사업장관리번호와 미승인 하수급인관리번호가 무엇인가요?**

**A :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(보험료 납부 및 근로내역 신고번호), 미승인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여(근로내역신고번호)한 것입니다.**

◆ 사업장관리번호 :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  
하도급 공사금액 1억원 이상시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착공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통해서 해당 하도급 공사의 산재/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하도급사가 직접할 수 있다. (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받은 번호)

※ 원도급사가 도급계약서 사본,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을 제출

◆ 미승인 하수급인관리번호(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 부여)  
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일용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를 하도록 원도급사가 노동부고용지

원센터에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(고용안정센터에서 부여받은 번호)

**Q : 하자보수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여부?**

**A : 본사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.**

◆ 현장 종료로 현장에서 근로내역 신고를 할 수 없음.  
- 근로내역 신고는 공사계약 기간 중에만 신고할 수 있다.

◆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역신고  
- 근로내역 신고시 공사명을 하자보수(현장명기제)로 신고

※ 하자보수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함

### 4대보험 사후정산제

◆ 적용시기 법적근거  
공공 공사 계약·입찰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,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계약 이행에 따라 정산[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]. 국가발주공사 2006.12.29 개정일 이후 입찰부터 적용, 지자체발주공사 2007.4.2 개정일 이후 입찰부터 적용, 민간공사 2008.1.1 이후 입찰부터 적용

◆ 적용범위  
적용대상자 : 직접 노무비 대상 일용근로자(본사 및 간접 노무비는 제외)

피보험자격 : 현장 단위로 월 20일 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

◆ 보험료 산정 방법

EDI 방식에 의한 자격변동신고 및 납부고지시스템 운영 “현장별보험료납부확인서” 발급

◆ 보험료확정정산절차

공사 종료 후 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근거하여 입찰 공고시 고지한 보험료 내에서 정산

- 국민건강보험료 : 직접노무비 × 1.59%(1개월이상 공사)
- 산재보험료 : 노무비 × 3.7%
- 고용보험료 : 노무비 × 1등급 : 1.23, 2등급 : 0.89, 3등급 : 0.74, 4등급 : 0.72, 5등급 : 0.69-노무비율 : 원도급 : 28%, 하도급 : 32%

**4대보험 사후정산제 도입**

◆ 민간공사

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시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보험, 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. [건설법제22조5항]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토록 함[건설법시행령제26조의23항2008.1.1 시행]

◆ 관공사 및 지자체

공사 공공공사 계약시, 입찰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,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한 후 계약이행에 따라 정산[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3조] 국가 발주공사2006.12.29 이후, 지자체발주 공사 2007.4.2 이후 적용

◆ 사회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0-152호)

- 국민연금보험료 : 직접노무비 × 2.48%(1개월이상 공사)

**사회보험사후정산절차**

-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시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하도록 사전 안내
- 입찰자는 보험료 변동없이 투찰하고 계약
-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 가산출내역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
- 원수급인 현장설명시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내용설명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,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, 단 “보험료 납부인수계약”에 의거 “하수급인 보험가입자납부 인수승인”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(하청)가 납부
-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각 사업주 단위로 현장별 1개월에 20일 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
-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기성금 정산
- 원수급인은 하도급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원도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 청구
- 발주기관은 증빙확인 후 원수급인에게 원·하도급 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성금 지급
- 공사종료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근거하여 입찰공고시 고지한 보험료 내에서 정산